사무분장규정 4-1-2

규정번호 4-1-2
제정일자 1981.9.11
최근개정 2026.9.21
개정차수 76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사무를 체계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담당할 소관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대학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 목 실

제3조 (선교지원팀) 선교지원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4.7.24.)

1. 각종예배 주관
2. 인성채플 운영(개정 2018.08.27.)
3. 기독동아리 활동지원
4. 신앙(기독교)강좌 운영
5. 신앙훈련 운영 및 지원
6. 선교활동
7. 사회봉사 운영 및 지원(개정 2017.02.27.)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의2 (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 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명지전문대학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공동체성경읽기운동 확산 추진
2. 공동체성경읽기운동의 실행과 확산을 위한 리더 발굴 및 육성
3. 기타 성경 읽기 운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및 JSU북클럽 운영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26.2.6.]

제3장 기 획 실

제4조(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2024.01.24)

1.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공간활용 계획 수립
3. 학생 및 교직원(조교) 정원 조정
4. 직제 관리 및 사무분장 조정
5. 제규정 관리 및 법령안내
6. 대학평가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7. 교내·외 홍보 및 홍보매체(영상물) 관리
8. 구성원 참여·소통 실적관리
9. 주요업무보고
10. 정보공개 처리(관리)
11. 국내기관 교류협력
12. <삭제(2026.07.20.)>
13.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운영
14. 대학평의원회 운영
15. 교무위원회 운영
16. 시설위원회 운영
17.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18.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1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4조의2(예산감사팀) 예산감사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18.08.27.)

1.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2. 실행예산 편성
3. 예산통제 및 집행분석
4. 교직원 인건비 책정 (개정 2019.07.30)
5. 학생납입금 책정(개정 2024.01.24.)
6. 대외기관 기채 검토 및 운영
7. <삭제(2023.06.19.)>
8. 대학(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주관
9. 물품 및 시설 검수
10. <삭제(2023.06.19.)>
11. <삭제(2023.06.19.)>
12. <삭제(2023.06.19.)>
13. <삭제(2023.06.19.)>

14.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
15. <삭제(2023.06.19.)>
16. <호 삭제(2022.06.08.)>
17. <삭제(2023.06.19.)>
18. 기금관리(신설 2023.06.19.)
19. 대내·외 법률 소송 대응 및 조정(신설 2023.06.19.)
20. 법률 자문 계약 및 관리(신설 2023.06.19.)
21. 위탁교육기관 관리 및 운영지원(신설 2023.06.19.)
22. 각종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23. 부정청탁 방지관리(신설 2024.01.24.)
2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4장 교무처

제5조(교무입학팀) 교무입학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2024.01.24)

1. 학사일정 수립
2. 교원인사 일반
3. 교원 신규 임용
4. 교원 승진 및 재임용(정년보장 포함)
5. 보직 교원 임·면
6. 교원 및 조교 신원·경력 조회
7. 교원 훈·포상 추천
8. 교원연수
9. 교원 학위취득
10. 교원 및 조교 제증명 발급
11. 교원 국외여행 및 출장
12. 교수업적평가
13. 국내·외 파견교류
14. 교수회의 운영
15. 국내·외 학술회의 지원
16. 강사 임용 및 인사관리
17. 조교인사 관리
18. 신·편입생 모집
19. 위탁생 모집(산업체·군)

20. 신입학 지원자 통계분석
21. 신·편입학 입시홍보
22. 위탁생 입시홍보(산업체·군)
23. 입시 관련 모집요강 및 홍보물 제작
24.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25. 교원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6.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
27.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 운영
28.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
29.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30.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31. 입학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3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
34.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
35. 입시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TFT운영
3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의2(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18.08.27.,2020.02.17)

1. 교과과정 운영
2. <호 삭제(2022.12.12.)>
3. 시간표 및 강의실 배정
4. 수강신청 관리(개정 2023.06.19.)
5. 시험관리
6. 강의평가 실시
7. 출강관리
8. <삭제(2023.06.19.)>
9. <호 삭제 2019.07.30.>
10. 시간계정 관리
11.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개정 2023.06.19.)
12. 전공연계 자격증 신청 지원(개정 2023.06.19.)
13. 학적 관리
14. 학력 조회
15. 학적변동 처리
16. 재적통계 처리

17. 성적처리 및 관리
18. 재입학 처리
19.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20. <호 삭제 2020.07.27.>
21. <삭제(2023.06.19.)>
22. <호 삭제(2022.12.12.)>
23. <삭제(2023.06.19.)>
24. <호 삭제 2020.07.27.>
25. 학생현장실습(자격증 과정) 운영
26. 특별과정 운영
27. <삭제(2023.06.19.)>
28. 민원처리(제증명 발급)
29. <삭제(2023.06.19.)>
30. 야간수업 운영 지원
31. <호 삭제 2021.08.18.>
32. <호 삭제 2021.08.18.>
33. <호 삭제 2020.07.27.>
34. <호 삭제 2021.08.18.>
35. <호 삭제 2021.08.18.>
36. 역량기반 학사시스템 운영 지원
37. <호 삭제(2022.06.08.)>
38. <호 삭제(2022.06.08.)>
39. <호 삭제(2022.06.08.)>
40. <호 삭제(2022.06.08.)>
41. 전과 처리(신설 2023.06.19.)
42. 제적 처리(신설 2023.06.19.)
43. 전자출결시스템 관리(신설 2023.06.19.)
44. 학사지원팀 관련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45. 수업운영 관리(신설 2023.06.19.)
46. 현장수업 지원(신설 2023.06.19.)
47. 교·강사협의회 운영(신설 2023.06.19.)
48. 교육과정 전담교원 운영(신설 2023.06.19.)
49. 계절학기 운영(신설 2023.06.19., 개정 2026.9.21.)
5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호변경 2021.01.21., 2026.9.21.)

제5조의3(학사학위운영센터) 학사학위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0.06.22.)

1. 학사학위운영센터 운영계획 수립(개정 2021.06.21.)
2.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인가신청) 조정 및 전형(홍보) 관리(개정 2021.06.21.)
3. 전공심화과정 입학 및 졸업사정 지원(개정 2021.06.21.)
4.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점검지원(개정 2021.06.21.)
5.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호신설 2021.06.21.)
6.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자체평가) 및 성과분석(개정 2021.06.21.)
7.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운영(개정 2021.06.21.)
8.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운영(개정 2021.06.21.)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21.06.21.)

제5조의4(교육과정혁신팀) 교육과정혁신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21.08.18., 개정 2022.6.8.,2024.7.24)

1.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행, 관리 및 운영(개정 2022.06.08.,2022.12.12)
2. 교양 및 직업기초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개발(편), 운영, 성과관리 및 질관리(개정 2022.12.12.)
3. 교양 교·강사 운영(개정 2023.06.19.)
4. 교양교육방법의 개선(개정 2023.06.19.)
5. 교양교재 개발 및 연구 운영 지원(개정 2023.06.19.)
6. 교과과정 편성(신설 2022.06.08.)
7. 교육운영계획서 작성지침 수립(신설 2022.06.08., 개정 2022.12.12)
8.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개발(편)지원, 성과관리 및 질관리(신설 2022.06.08., 개정 2022.12.12.)
9. 교과 교육과정 인증제 운영(신설 2023.06.19.)
10. 역량성취도 평가 지원(신설 2022.06.08.)
11. <삭제(2024.7.24.)>
12. 역량기반 학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신설 2022.06.08.,개정 2023.06.19)
13. <삭제(2023.06.19.)>
14. 교과과정위원회 운영(신설 2022.12.12.)
15. 교과 연계 학습역량 및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지원(신설 2023.06.19.)
16. 핵심역량진단(직업기초능력 포함) 평가(신설 2024.7.24.)
17. <삭제(2026.9.21.)>
1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호번호변경 2022.06.08.)

제5조의5(융합교육지원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자유전공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3. 자유전공학과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
4. 자유전공학과 학과 배정
5. 학생설계전공 운영
6. J.A.교수 운영
7. 자유전공학과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8.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9.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운영

[본조신설 2026.2.6.]

제6조 <조삭제 2018.08.27.>

제7조 <조삭제 2018.08.27.>

제7조의2 <조삭제 2015.12.03.>

제5장 입학홍보처(폐지 2018.08.27)

제8조<조삭제 2018.08.27.>

제5장 학생지원처

제6조(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12.28., 개정 2017.02.27., 2018.08.27)

1. 학생복지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개정 2023.06.19.)
2. 보건실 관리 및 운영(개정 2023.06.19.)
3. 학생자치단체 관리 및 지도
4. 각종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5. 학생행사 안전관리 및 지도(개정 2022.08.08.,2023.06.19)
6. 국가장학·학자금 관리 및 지급(개정 2023.06.19.)
7. <호 삭제(2021.10.25.)>
8. 동문관리
9. <호 삭제(2021.10.25.)>
10.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11. 장학위원회 운영
12. 상벌심의위원회 운영
13. <호 삭제(2021.10.25.)>
14. <호 삭제(2021.10.25.)>
15. 상담지도교수제 운영(개정 2016.12.28., 2026.2.6.)
16. 학생생활 지원 및 운영(개정 2023.06.19.)

17. <호 삭제(2022.06.08.)>
18. <호 삭제(2022.06.08.)>
19. <호 삭제(2022.06.08.)>
20. <호 삭제(2022.06.08.)>
21. <호 삭제(2022.06.08.)>
22. 소수집단학생(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신설 2022.08.08.)
23. 교내장학금 관리 및 지급(신설 2023.06.19.)
24. 교외장학금 관리 및 지급(신설 2023.06.19.)
25. 장학지원 업무(신설 2023.06.19.)
26. 장학통계 관리(신설 2023.06.19.)
2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의2(학생역량개발팀) <삭제(2024.7.24.)>

제6조의3(취·창업팀) 취·창업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21.01.21., 개정 2022.6.8.,2024.7.24., 2026.2.6.)

1. 취·창업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22.06.08.,2023.06.19. 2026.2.6.)
2. <삭제(2024.01.24.)>
3. 취·창업 관련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운영(개정 2022.06.08.,2023.06.19., 2026.2.6.)
4. <삭제(2024.01.24.)>
5. 취업통계 및 현황 관리(개정 2022.06.08.,2023.06.19.,2024.01.24)
6. <삭제(2023.06.19.)>
7.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산업체 관리(개정 2022.06.08.,개정 2023.06.19., 2026.2.6.)
8.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잡카페 운영(개정 2022.06.08.,개정 2023.06.19., 2026.2.6.)
9.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질관리(평가, 환류)(신설 2022.06.08.,개정 2023.06.19., 2026.2.6.)
10. <삭제(2026.2.6.)>
11. 정부지원 취·창업 교육 관련 사업 운영(신설 2022.06.08., 개정 2026.2.6.)
12. 교원 및 학생 창업 지원(신설 2022.06.08., 개정 2024.01.24.)
13. 취·창업 관련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개정 2026.2.6.)
14.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 운영(취·창업 관련)(신설 2023.06.19., 개정 2026.2.6.)
15. 취·창업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23.06.19.,개정 2024.01.24., 2026.2.6.)
16. 스마트케어 학생역량 이력관리시스템 관리운영(신설 2024.7.24.)
1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의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 신설 2021.10.25., 조번호변경 2022.06.08)

1. 장애학생 행정지원
2. 장애학생 학습지원

3. 장애학생 시설지원(개정 2023.06.19.)
4. 장애학생 관련 평가 및 성과관리(개정 2023.06.19.)
5. 장애학생도우미 운영 및 관리(개정 2023.06.19.)
6.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
7.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및 실적관리(개정 2023.06.19.)
8.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개정 2023.06.19.)
9. <삭제(2022.08.08.)>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신설 2023.06.19.)

제6조의5(AI융합진로지원센터) AI융합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AI융합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수립
2. 진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
3. 진로 활성화 계획
4. 진로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운영
5.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6. 전공멘토교수제(A.A.) 운영
7. 정부지원 진로 교육 관련 사업 운영
8. 진로 관련 위원회 운영
9. 진로·컨설팅 운영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26.2.6.]

제6장 산학협력처(장명 변경 2018.12.10.)

제7조(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1. 가족회사(산학협력)활동 지원(개정 2023.06.19.)
2.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개정 2023.06.19.)
3.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4. 산학협력 수요조사(개정 2023.06.19.)
5. 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
6. 실험실습 교육관련 구매계획 및 관리운영(교육용 기자재·비품 및 실험 실습재료)
7. 교육용 기자재(비품) 불용처리
8. 교육용 기자재 및 비품 기증
9. (신설 2014.03.01., 호 삭제 2019.06.17)
10. <호 삭제 2021.08.18.>

11. <호 삭제 2019.06.17.>
12. <호 삭제 2021.08.18.>
13. 학술활동지원(개정 2023.06.19.)
14. 교내·외 연구관련 지원(개정 2023.06.19.)
15. 국내·외 연구기관 학술교류 지원(개정 2023.06.19.)
16. <삭제(2023.06.19.)>
17. <삭제(2023.06.19.)>
18. <삭제(2023.06.19.)>
19. 학교기업 운영
20. <삭제(2023.06.19.)>
21. 산업체 연계 교원실무역량강화(신설 2023.06.19.)
22.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23. 교내·외 연구(신설 2026.2.6.)
24.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정보 교류(신설 2026.2.6.)
25. 연구과제 결과물 관리 및 활용(신설 2026.2.6.)
26. 연구논문집 발행(신설 2026.2.6.)
2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26.2.6.)

제7조의2(조신설 2018.08.27., 조삭제 2018.12.10.)

제7조의3(산학AI융합지원센터)(조신설 2021.08.18., 조명변경 2026.2.6.) 산학AI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6.2.6.)

1. 현장지도 및 지원
2. 산업체, 학생, 지도교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
3. 유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강화로 우수인력 양성
4. 산업체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7조의4(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21.08.18.)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7장 사 무 처

제8조(총무회계팀) 총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1. 직인 보관 및 관리
2. 일반직원 인사관리
3. 직원복무 관리
4. 일반직원 당직근무 운영
5. 일반직원 교육훈련
6. 일반직원 포상 및 징계 관리
7. 사무용품 조달 및 인쇄
8. 교직원 보수책정
9. 교직원 연금 관리
10.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 및 건강진단
11. 교직원 후생복지
12. 교직원 친화회 운영
13. 각종행사 주관 및 지원
14. 교직원 제증명 발급
15. 공문서 및 보존문서 관리
16. 직원 출장 관리
17. 보안관리(신설 2016.04.26.)
18. 서무일반
19. 차량 및 주차장 관리
20. 기술직원 관리(개정 2022.04.08.)
21. 회계지침 관리(개정 2023.06.19.)
22. 학생납입금 수입
23. 기타 세입금
24. 소액 용도 자금
25. 출금전표, 대체전표 기표
26. 교직원 인건비(개정 2023.06.19.)
27. <삭제(2023.06.19.)>
28. <삭제(2023.06.19.)>
29. 현금출납

30. 결산
31. 자금운용
32. 채권·채무
33. 제세관리
34. <삭제(2023.06.19.)>
35. 법인신용카드 관리(신설 2023.06.19.)
36. 민원처리(제증명 발급)(신설 2023.06.19.)
37. 계약직원 인사관리(신설 2023.06.19.)
38. 노사협의회 운영관리(신설 2023.06.19.)
3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8조의2(구매시설팀) 구매시설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기본재산 관리
2. 기자재(비품) 및 실험실습재료 등 구입 / 용역 계약(개정 2023.06.19.)
3. 교내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개정 2023.06.19.)
4. 운영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개정 2023.06.19.)
5. 교육용/사무용 기자재 및 비품 유지보수
6. 교내/교외 이용자에 대한 시설 대관
7. 공공요금 관리
8. 정기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리
9. 교내 폐기물 처리
10. 교육시설 신축/증축/환경개선 공사
11. 민방위 교육 및 자원관리(신설 2016.04.26.)
12. 용역관리(개정 2023.06.19.)
13. 안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개정 2023.06.19.)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개정 2023.06.19.)
15. 재난 안전관리
16. 소방 안전관리
17. 위험물 안전관리(개정 2023.06.19.)
18. 연구실 안전관리(신설 2021.01.21.)
19. 교육시설 안전관리(개정 2023.06.19.)
20. 고압가스 안전관리(신설 2023.06.19.)
21. 환경 안전관리(신설 2023.06.19.)
22. 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2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호변경 2021.01.21.)

제8장 대학혁신본부 (신설 2019.11.25., 개정 2022.02.21)

제9조(대학혁신팀) <삭제(2026.2.6.)>

제9조의2(대학혁신지원사업단(혁신지원사업운영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22.02.21.)

1. 혁신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 수립·운영
2. 혁신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 총괄 점검
3.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운영 총괄(개정 2023.06.19.)
4.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총괄(개정 2023.06.19.)
5. 사업비관리위원회 운영 총괄(개정 2023.06.19.)
6.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개정 2023.06.19.)
7. 대학혁신위원회 운영 총괄(신설 2026.2.6.)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26.2.6.)

제9조의3(AI·IR센터(AI·IR팀)) AI·IR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성과지표 개발
3. AI 및 일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성과분석
4. AI 및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관리 시스테 운영
5.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및 결과분석
6. 대학교육편제단위조사(표준분류체계) 및 사후관리
7.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사후관리
8. 대학정보공시 운영 및 주요지표 분석・비교
9. 대학산학협력활동 및 연구활동 실태조사
10. 성과관리 결과 보고 및 구성원 공유
11. AI·IR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2.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전면개정 2026.3.23.]

제9장 평생교육본부(개정 2018.08.27.,2025.3.31)

제10조(평생교육팀) 평생교육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05.16., 2018.08.27)

1. 평생교육본부 운영계획 및 성과분석(개정 2023.06.19.,2025.3.31)
2. 협약기관 관리 및 협력(개정 2023.06.19.)
3. 학점은행제 과정개발 및 현장평가(개정 2023.06.19.)

4. 학점은행제 모집 및 홍보(개정 2023.06.19.)
5. 학점은행제 등록 및 장학관리(개정 2023.06.19.)
6.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개정 2023.06.19.)
7. 학점은행제 수업 및 성적관리(개정 2023.06.19.)
8. 학점은행제 학생행사 및 활동지원(개정 2023.06.19.)
9. 학점은행제 제증명 발급(개정 2023.06.19.)
10. 계약학과 모집 및 산업체 관리
11. 계약학과 학사관리 지원
12. 계약학과 장학 및 학생 지원
13. 비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
14. 야구심판양성과정 교육 운영
15.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 운영
16. 평생교육본부 운영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2025.3.31)
17.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
18.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
19. <삭제(2023.06.19.)>
2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의2(원격평생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0.07.27.)

1. 평생교육본부의 원격교육 시스템 정책수립 및 추진(개정 2025.3.31.)
2. 평생교육본부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품질관리 및 지원(개정 2025.3.31.)
3. 평생교육본부의 원격수업 시스템 관리 운영(개정 2025.3.31.)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외부기관 연구과제 및 컨설팅 업무 수주와 운영
5. 비학위 과정 및 일반인 대상 원격교육 운영 및 지원
6. 원격교육과 관련 수업료 징수 및 운영 등 회계 업무
7.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활동 지원

제10조의3(성인학습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성인학습 관련 교육의 질 관리 개발 및 운영
2. 성인학습 관련 전공교육과정, 기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성인학습 관련 비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
4. 성인학습 관련 이러닝 교과목 개발 및 운영
5. 성인학습 관련 학생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성인학습 관련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7. 기타 성인학습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5.1.23.]

제10조의4(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M-RCC)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사회 협력 수요분석
3. 지역사회 협력 활동 및 성과관리(봉사, 진로체험, 수탁기관 운영 등)
4. 지역사회 연계 (비)교과과정 모델 개발(리빙랩) 및 운영
5. 지역사회 혁신(발전) 기여 기획 및 컨설팅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7. 지역사회정책연구 및 공동 브랜드 개발
8.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운영
9. 지역사회협력실무위원회 운영
10. 늘봄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6.7.20.)
11. 기타 지역사회 협력 관련 업무 지원(개정 2026.7.20.)

[본조신설 2025.3.31.]

제10장 국제교류본부(신설 2025.9.29.)

제11조(글로벌교육센터(글로벌교육팀)) 글로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국제화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리
3. 외국 대학·기관·단체 교류 협력
4. 외국 대학과 교환학생 상호 파견(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포함)
5.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편·입학 지원
7. 해외인턴 및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글로벌현장학습(해외현장실습) 국고지원사업 운영
9. 재학생 외국어교육 지원
10. 국제교류 연계기관 교직원 해외연수·파견 및 교류
11. 국제교류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운영
12. 기타 국제화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26.7.20.]

제11조의2(유학생지원센터(유학생지원팀)) 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유학생 전담학과 학사관리 및 운영 지원
2.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연계 및 현장실습 지원
3.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어학,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운영

4. 유학생 비자(체류) 관리(거주, 보험 등) 및 행정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장학) 안내 및 학사(학업) 상담 지원
6.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한국문화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7. 긴급 상황(질병, 안전, 법률 등) 발생 시 대응 지원 체계 운영
8.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자치활동 지원
9.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10.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1. 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26.7.20.]

제11조의3(한국어교육센터(한국어교육팀))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교재 개발
2.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한국어 강사 위촉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시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5. 한국어 특강 실시
6. 한국어 모의 토픽 시험 실시
7. 한국어 경진 대회 실시
8. 한국어 학습 상담
9.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 제공
10.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초빙 세미나 개최
11. 해외 한국어교육 전담관리(파견 한국어강사 관리 포함)

[본조신설 2025.9.29.]

제11장 학술정보원(개정 2018.08.27.)

제12조(학술정보팀) 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1. 자료구입 계획 수립
2. 자료 구입 및 검수
3. 자료수증 및 기증 관리
4. 도서정리 및 DB 관리
5. 전산시스템 관리
6. 도서열람 및 열람실 관리(일반도서,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비도서 등)
7. 분실자료 및 폐기자료 처리

8. 상호대차
9. 연체자료 처리
10. 연속간행물 구독 관리(개정 2023.06.19.)
11. 자유열람실 관리
12. 미디어룸 관리(개정 2023.06.19.)
13. 역사자료 관리(개정 2023.06.19.)
14. 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
15. 유물 관리(개정 2023.06.19.)
16. <삭제(2023.06.19.)>
1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2조의2(정보관리팀) 정보관리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신설 2018.08.27.,조번호 변경 2025.9.29.)

1. 정보화 관련 방안 수립 및 사업시행
2. 학사행정 전산화 및 운영
3. 정보화 인프라 운영
4. 종합정보시스템 설계 및 운영(개정 2023.06.19.)
5.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개정 2023.06.19.)
6.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7. 정보보안 수준진단 운영(개정 2023.06.19.)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1장 정보관리센터(폐지 2018.08.27.)

제14조 <조삭제 2018.08.27.>

제12장 국제교류원(신설 2017.02.27.)(폐지 2018.08.27.)

제15조 <조삭제 2018.08.27.>

제12 장 생 활 관(신설 2016.12.28.)

제13조(생활관) 생활관 운영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1. 선발 배정 및 입·퇴사(개정 2023.06.19.)
2. 생활지도 및 상담(개정 2023.06.19.)

3. 생활관 운영 및 지원(개정 2023.06.19.)
4. 예산 및 지출 관리(개정 2023.06.19.)
5. <삭제(2023.06.19.)>
6. 시설 및 비품 관리(개정 2023.06.19.)
7. 운영위원회 운영(개정 2023.06.19.)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3장 예비군대대

제14조 (예비군대대) 예비군대대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2.27., 2018.2.5., 2018.08.27.)

1. 예비군 자원관리
2. 예비군 교육훈련 관리
3. 예비군 향방운영
4. <호 삭제 2016.04.26.>
5. <호 삭제 2016.04.26.>
6. 정기감사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4장 교수학습센터(신설 2018.08.27., 명칭변경 2019.02.25., 2022.06.08.)

제15조(교수학습팀) 교수학습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 신설 2018.08.27., 개정 2019.02.25.,2020.02.17.,2022.06.08.)

1. 교육혁신을 위한 교수학습모델 연구 및 개발
2.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개발
3. 교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개정 2023.06.19.)
4. 학습역량 진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개정 2023.06.19.)
5.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개정 2023.06.19.)
6. 학습역량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개정 2023.06.19.)
7. <호 삭제 2020.07.27.>
8. <호 삭제 2021.01.21.>
9. <호 삭제 2021.01.21.>
10. <호 삭제 2021.01.21.>
11. <호 삭제 2021.01.21.>
12. 성과공유 및 확산(개정 2023.06.19.)

13. 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14. 교수학습 지원(신설 2023.06.19.)
1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4장 (조삭제 2021.01.21)

제15조 <조삭제 2021.01.21.>

제15장 <삭제(2025.9.29.)>

제16조 <삭제(2025.9.29.)>

제16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신설 2020.07.27)

제17조(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조 신설 2020.07.27.)

1. 교내 원격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2.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운영(신설 2023.06.19., 개정 2025.1.23)
3. <삭제(2025.1.23.)>
4.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인증 관련 직무
6.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7. 글로벌 원격교육 추진
8. 비대면 교육 정책 수립 및 수업지원
9. 원격교육 관련 외부기관 연계 사업(개정 2023.06.19.)
10. 대학 메타버스 업무 관리·운영(호신설 2022.06.08.)
11. 기타 센터의 목적에 관계되는 업무(호번호변경 2022.06.08.)

제17장 기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센터)(장번호 변경 2018.12.10., 개정2019.02.25.,장번호 변경 2020.07.27)

제18조(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 <삭제(2025.3.31.)>

제18조의2(기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기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의 사무분장은 각 기관 및 연구소(센터)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

다.(개정 2017.02.27.)(조번호 변경 2018.12.10., 개정 2019.02.25., 조번호 변경 2020.07.27., 2022.06.08)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12> <생략>

<13>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제5조의 “예산감사과”를 각각 “예산감사팀”으로, 제6조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제7조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제7조의2의 “입학관리과”를 각각 “입학관리팀”으로, 제8조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제9조의 “연구지원과”를 각각 “연구지원팀”으로, 제10조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제11조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제12조의 “회계과”를 각각 “회계팀”으로, 제12조의2의 “시설관리과”를 각각 “시설관리팀”으로, 제13조의 “학생서비스과”를 각각 “학생서비스팀”으로 한다.

<14>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3조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취업진로지원팀”을 “진로취업지원팀”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5호,제22호~제23호, 제6조의4제9호)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제6호)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2, 제5조의4)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의3)

부 칙

이 규정은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의4, 제5조의4제11호·제16호·제17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3제16호, 제9조의3제6호·제7호)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의3제10호, 제10조의3, 제17조제2호·제3호)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9장, 제10조제1호·제16호, 제10조의2제1호·제2호·제3호, 제10조의4, 제18조)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0장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5장 제16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의2, 제5조의5, 제6조제15호, 제6조의5, 제7조제23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7호,제6조의3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7조의3,제9조의3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9조,제9조의제7호·제8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9조의3)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2호, 제10조의4제10호·제11호, 제11조, 제11조의2)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2제49호·제50호, 제5조의4제17호)